

대구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1117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9,5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1663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 채무자 주식회사 C은 994,595,406원 및 그 중 301,537,704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693,057,316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채무자 B은 채무자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1항 금원 중 693,057,702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20. 9. 29.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자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20. 7. 14.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93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 E와의 사이에 거래가액을 49,500,000원으로 하여 2020. 8.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동인들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1)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7. 20. B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20. 8. 26. 대출은행에 보증금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마. B의 위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가액	증거자료
1	경상북도 예천군 F	303,335,000원	감정평가서 갑 제4-1호증
2	경상북도 예천군 G		
3	경상북도 예천군 H		
4	경상북도 예천군 I		
5	경상북도 예천군 J		
6	경상북도 예천군 K		
7	경상북도 예천군 L	49,500,000원	
합산액		352,835,000원	

(2)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자료(갑)
1	원고	994,595,406원	1
2	주식회사 M	748,893,074	3-1
3	한국산업은행(N유한회사가 채권 양수함)	1,000,000,000	3-1, 4-5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3,583,335	3-1, 4-3
5	한국무역보험공사	2,288,121,450	3-1, 4-6
6	O 주식회사	2,368,159,758	3-1, 4-4
7	주식회사 P	183,549,044	3-1
8	Q	50,000,000	3-1
9	R 주식회사	9,361,323	4-2
합산액		7,706,263,390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4-4,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그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1주일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출은행에게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대표이사로서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어 피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2020. 5. 11.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이 경기불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위 차용금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매금 중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매수를 제의하여 적정한 가액인 3,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각된 후 2020. 7. 22. 피고는 S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20. 8. 26. 이를 말소하였고(갑 2 참조), 그 전인 2020. 8. 20. 소외 D, E와의 사이에 거래가액을 49,5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동인들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95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95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예천군 L 답 1971.8㎡ 끝.

1. 신용보증약정
채권자는 채무자 (주) []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가 신청의 ①, ② 은행 [] 금융센터지점, ③ 은행 구미중앙지점(이하 신청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할 때, 채무자가 대출받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가. 보증일: ①2017. 9. 15.

②2018. 4. 13.

③2020. 3. 18.

나. 보증기한: ①2018. 9. 14.

②2019. 4. 12.

③2025. 3. 17.

다. 보증금액: ①금495,000,000원정

②금285,000,000원정

③금300,000,000원정

라. 대위변제: 보증사고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출채무금을 신청의 은행에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마. 구상금의 범위: 대위변제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대위변제한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채권자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바. 연대보증인: 채무자 []은 채무자가 위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①, ②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대위변제
채무자는 사업운영 중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2020. 8. 26. 신청의 ③은행에 금301,537,704원, 2020. 8. 27. 신청의 ①, ②은행에 금694,822,62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

3. 손해금 및 확정손해금
채권자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로 정해져 있다. 위 ①보증에 대하여 회수한 돈 1,765,3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386원의 손해금이 생겨 확정되었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1). 채무자 (주) []은 994,595,408원(대위변제금 301,537,704원 + 확정손해금 386원) 및 그 중 301,537,704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8. 27.부터, 각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693,057,316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각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채무자 []은 채무자 (주) []과 연대하여 위 (1)항 금원 중 693,057,316원(위 ①, ②대위변제금잔액 693,057,316원 + 위 ①확정손해금 386원) 및 그 중 693,057,316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별지 '1. 신용보증약정' 이하 기재와 같다.